



FTA 원산지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uTradeHub상 e-C/O 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C/O Systems Based on uTradeHub through the Analysis of FTA Rules of Origin

저자
(Authors) 심종석
Chong-Seok Shim

출처
(Source) [e-비즈니스연구 11\(2\)](#), 2010.6, 319-342 (24 pages)
[The e-Business Studies 11\(2\)](#), 2010.6, 319-342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제e-비즈니스학회](#)
Global E-Busines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765891>

APA Style 심종석 (2010). FTA 원산지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uTradeHub상 e-C/O 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1(2), 319-342.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FTA 원산지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uTradeHub상 e-C/O 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심 중 석*

초 록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요소는 관세와 수량제한을 제거하고 서비스 무역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기반으로, 원산지규정·긴급수입제한조치·반덤핑조치·보조금과 상계조치·예외와 유보조항·분쟁해결 등을 그 핵심에 두고 있다. 강학상 원산지규정은 국제무역상 특정물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각종 기준과 절차로 설명되는데, 이를테면 물품의 생산 및 제조국가, 즉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률·규정 및 관련 행정적 절차 등을 총칭한다. 최근 생산활동이 국가 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다국 간 진행되는 소위 생산의 범세계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최종 물품은 물론 각종 부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산지의 정확한 판정을 위한 규칙 내지 규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각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수출·입 통관 시 관련 서류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원산지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기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국에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제3국의 경유나 보세지역의 통관과정에서 가공공정을 거치는 것을 방지하고도 있다. 결국 그간 각국의 원산지규정은 상이하고 복잡·불명료하며 또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일련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본 고에서 주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개별 FTA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국별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하고 그 내용 또한 복잡하여 때로는 당해 원산지규정으로 인하여 FTA 수출기업이 그 활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전자무역상 single window 기반 uTradeHub에 FTA 기업이 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보다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그간의 우리나라 FTA 원산지관리체계의 분석을 통해 이에 따른 이점과 실행방안을 확립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관리체계, 원산지관리시스템

< 차 례 >

- | | |
|--------------------------------------|------------|
| I. 서론 | |
| II. 원산지 관리규정과 판정기준 | V. 요약 및 결론 |
| III. FTA 원산지 판정기준의 내용 | <참고문헌> |
| IV. uTradeHub에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ABSTRACT> |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경영학박사·법학박사), cyrus@daegu.ac.kr

I. 서론

다자간 무역연계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WTO는 동 기구의 발족에 기하여, 당초 지역주의(regionalism)¹⁾는 점진적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을 기치에 두었으나, 오히려 이 같은 기대와 전망은 예상과는 달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급속한 확대·심화에 따라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차제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급변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을 적극 수용하고, 나아가 전 방위적 대응태세를 확보하고자 그간 한-칠레(2004.04.01)를 시초로 한-싱가폴(2006.03.02), 한-EFTA(2006.09.01)²⁾, 한-ASEAN(2007.06.01)³⁾ 등과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미국 및 한-EU(2009.10.15), 한-인도 CEPA(2010.01.01)와도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2007.06.01), 이후 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⁴⁾ 및 중국 등과 협상 전단계인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등 향후 최대 50여 개국과 FTA 실현을 목적으로 신속·민활한 대응태세를 견지하고 있는 중에 있다.

지역주의의 가장 기본적 형태로서 FTA가 이처럼 널리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모름지기 협정의 모든 체결국이 동일한 대외관세정책을 취해야 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에 비해 개별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보전할 수 있고, 더불어 신속한 협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범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FTA는 기존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경쟁정책·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무역규범분야를 포괄하여 체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전자상거래·노동기준·환경 등의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이 FTA의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체제의 발전과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각국이 여타 분야에로의 협력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FTA 중심요소는 무역에 있어 관세와 수량제한을 제거하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반덤핑조치(measures against anti-dumping), 보조금·상계조치(subsidies and countervailing), 예외와 유보조항(exception reservation), 분쟁해결

1) 지역주의(regionalism)는 국가 간 지리적 인접성·공동된 역사·문화적 배경·경제적 연관성과 같은 공통된 이해 관계를 가지는 특정 국가들이 무역에 관한 자유주의 및 무차별주의 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무역의 동향으로 설명된다. 이 경우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지역주의의 정책적 결과라고 하여 그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 시각도 있다(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는 구갑우, “세계무역기구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1, 429면.,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제1장 제1절).

2) EFTA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의 자유무역협정 연합체.

3) ASEAN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폴·태국·베트남 등 10 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체를 말한다.

4) MERCOSUR :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베네수엘라 등 5개국의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dispute resolution) 등이 FTA의 주요 골자를 이룬다.

논제에 기하여 이상의 FTA 중심요소 중 본 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안은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및 이에 관한 관리체계이다. 강학상 원산지규정이라 함은 국제무역상 특정물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각종 기준과 절차로 설명되는데, 이를테면 물품의 생산 및 제조국가, 곧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률·규정 및 관련 행정적 절차 등을 총칭한다.

최근 생산활동이 국가 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다국 간에 진행되는 소위 생산의 범세계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최종 물품은 물론 각종 부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원산지의 정확한 판정을 위한 규칙 내지 규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각종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의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수출·입 통관 시 관련 서류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원산지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국에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는 원칙⁵⁾을 적용함으로써 제3국의 경유나 보세지역의 통관과정에서 가공공정을 거치는 것을 방지하고도 있다. 결국 그간 각국의 원산지규정은 상이하고 복잡·불명료하여 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일련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왔다.⁶⁾

FTA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국별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하고 내용 또한 복잡하여 때로는 당해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FTA 기업이 그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본 고는 그간의 우리나라 FTA 원산지관리체계 분석을 통해 전자무역에 있어 single window 기반 uTradeHub상 FTA 수출기업이 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보다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그 이정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원산지 관리규정과 판정기준

1. 원산지 및 원산지규정의 주요 골자

원산지란 관세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를 의미한다. 이에 원산지규정은 물

- 5) ‘직접운송의 원칙’은 여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일례로 제3국에서 선적되었거나, 추가가공이 되었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후 수입된 물품 등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원산지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해서 수입될 경우에도 그 경유가 단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운송요건과 관련된 경우이거나, 제3국에서 재포장·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 및 환적 또는 일시 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또는 박람회·전시회 등 전시를 위해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비원산지 국가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 6) 관련 내용에 관한 상세는 성윤갑,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12.

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을 말하며, 대다수 국가들은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확인·표시하는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음이 통례이다. 이는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GATT(1994) 제1조에 규정된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MFN)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의미하는 바, 곧 특정국가간에 관세상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후자는 특혜원산지규정 이외 모든 것으로 WTO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 : HRO)이 이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상 물품의 원산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된다. 곧 특정국가로부터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당연히 원산지 식별이 필요한 까닭에 해당정책 운영상 원산지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등의 경우 원산지 식별은 물론 제소대상이 된 물품의 유사물품이나 국내산업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단순히 무역통계나 수입신고 작성을 위해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2. 원산지 판정기준의 내용

전 세계적으로 각국 기업은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특정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내지 반제품을 여러 국가에서 조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역시 특정국에서 전부 수행하지 않고 일부공정을 인접국가 또는 원거리의 저임금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어떤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단일기준에 근거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동인으로 기능한다. 이에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적 요건을 원산지판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이라 하는데, 일례로 교토협약(kyoto convention)과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원산지판정기준으로서 공히 완전생산기준과 완전생산간주기준을 포함한 완전생산기준(wholly produced criterion)과 세번변경기준(negative, positive 방식)·부가가치기준(value content ; 공제법·집적법·순원가법 등)·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 negative, positive 방식) 등을 포함한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완전생산기준

어떤 물품의 생산 또는 가공공정 전부를 한 나라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물 등의 1차 산품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완전생산간주물품은 실질적으로는 완전

생산이 아니나,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완전생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2)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 세번변경기준은 HS 코드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와 상이한 세번의 물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이는 세번변경에 불구하고 물품변형을 인정하지 않는 negative list 방식과 세번변경이 없음에도 물품변형을 인정하는 positive list 방식이 있다. 둘째 부가가치기준은 물품 생산과정에 일정수준 이상의 역내 가치를 추가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곧 물품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협정 당사국 영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동 기준은 세번변경이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도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 셋째 특정공정기준은 각 물품에 대해 주요한 제도가공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정공정기준은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다반사로 대부분 FTA에서 이는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3) 보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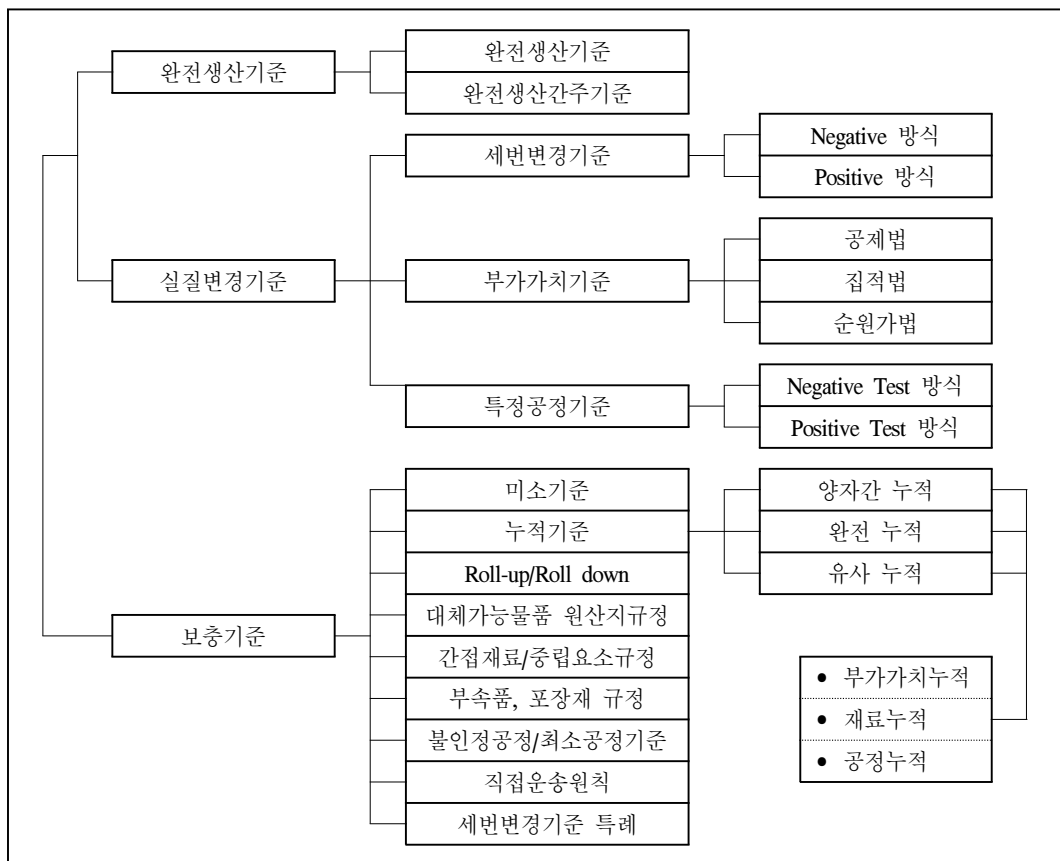
보충기준은 경우에 따라 이상의 각 기준에 참조되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나, 실질적 변형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지니고 있는 한계 또는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미소기준(tolerance rule) · 누적기준(accumulation) · 흡수규정(absorption 또는 roll-up) · 대체가능물품 원산지, 간접재료 원산지 등 다양한 형태의 보충적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미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물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원재료 세번이 일정수준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된다. 그러나 경미한 금액 또는 수량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FTA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금액 또는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역내교역 촉진과 원산지규정의 적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누적원칙은 물품 최종 생산자가 자국산이 아닌 FTA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로 간주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흡수규정은 중간재 원산지결정과 관련이 있는데,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최종제품에 사용되면 해당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며, 대체가능물품이란 물품특성 · 기능 ·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범용성 부분품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 또는 중립요소(neutral elements)는 물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과정에 사용되지만 당해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물품 또는 물품생산과 관련 건물유지나 설비작동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간접재료 원산지 결정방법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생산국에 관계없이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기준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요건 충족을 용이하게 하고, 세번변경기준 품목의 경우 간접재료에 대한 세번변경 여부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칠레 FTA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중립요소의 의미와 같이 이들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의 가격은 상품의 원산지결정시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상의 원산지 판정체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원산지 판정체계⁷⁾

7) 이하 표의 내용은 출처표기에 있어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는 경우 논자가 요약·정리한 것임을 참고로 함.

Ⅲ. FTA 원산지 판정기준의 내용

1. 완전생산기준

한-칠레와 한-싱가폴 FTA에서는 순수 역내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완전 역내산은 아니지만 역내산 인정범위 확대와 경제통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완전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물품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⁸⁾.

역내산 수산물의 경우 5개 FTA 모두가 영해 내에서 획득한 것에 대해 선박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연안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음이 대표적 실례이다. 곧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이나 선상가공품에 대해 자국산 선박이 획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자국산 선박의 인정기준은 한-칠레, 한-싱가폴, 한-ASEAN, 한-미 FTA에서는 기국요건(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과 등록요건(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party)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달리 한-EFTA에서는 기국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획득한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가 공히 적용되는데, 예컨대 한-칠레, 한-미 FTA에서는 연안국주의를, 한-싱가폴과 한-EFTA에서는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표 2〉 FTA 원산지규정의 완전생산기준 비교

구 분	완전생산기준	자국선박요건	영해의 범위
• 한-칠레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간주기준	기국요건+등록요건	칠레 EEZ포함(한국 불포함)
• 한-싱가폴			EEZ 불포함
• 한-EFTA	기국요건		
• 한-ASEAN	기국요건+등록요건		
• 한-미			

8) 한-칠레 FTA 완전역내산 간주 물품은 ① 자국 선박이 역외의 바다에서 획득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역내국 선박에서 가공·생산품, ② 해저 탐사권을 가진 자국인이 역외의 해저에서 채취한 물품, ③ 역내의 국가 또는 자국인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④ 역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부산물, ⑤ 역내에서 회수되고 재활용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중고물품, ⑥ 전적으로 상기 물품을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한 물품 등이다.

2. 실질변경기준

1) 부가가치기준

한-칠레, 한-싱가폴, 한-ASEAN, 한-미 FTA는 DC⁹⁾를 부가가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EFTA에서는 MC¹⁰⁾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인정수준은 30%에서 60% 이상에 이르기까지 FTA별로 다양하다. 각 FTA별 부가가치기준의 차이점은 이하 표와 같다.

〈표 3〉 FTA별 부가가치 기준의 차이점

구 분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한-미 ¹¹⁾
제품기준가격		FOB		EXW	FOB	
부가가치 산정공식		공제법/직접법선택	공제법	MC방식	공제법/직접법선택	
부가가치 비율	역외산가치	55% 또는 70%미만	-			
	역내산가치	45% 또는 30%이상	55% 또는 55%이상	30~60%	40% 이상	35% 이상
역내추가 가공품	원산지인정	100% 인정				
	원산지불인정	국산재료비 공제				

한-칠레, 한-ASEAN, 한-미 FTA에서는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한-싱가폴 FTA에서는 공제법만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의 일정비율도 계산법에 따라 기준가격이 달라지는데, 현재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는 EXW · FOB · CIF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한-칠레, 한-싱가폴, 한-미 FTA에서는 FOB로 산정하고 있고, 한-EFTA에서는 EXW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친 반제품을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반제품의 가격을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한-칠레, 한-싱가폴, 한-ASEAN, 한-미 FTA에서는 반제품 전체를 비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추가가공에 소요된 국내산 재료비는 공제할 수 있다. 반면에 한-EFTA에서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국산재료비 조차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¹²⁾

9)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국내부가가치(domestic value-added) 또는 누적기준(cumulation)이 적용될 경우 역내 부가가치(regional value-added)의 최소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10) 당해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데 허용되는 수입부품 및 재료 금액이나 수량에 관한 상한을 부과하는 방식.

11) 한-미 FTA의 경우 자동차는 순원가법을 적용.

12)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KIEP 연구보고서』(08-09), 2009, 77면.

2) 특정공정기준

동 기준에는 일정한 제조나 공정이 있어야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 **positive test** 방식과 일정한 제조나 공정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negative test** 방식이 있다. 한-칠레, 한-싱가폴 FTA는 양자 모두를, 한-EFTA와 한-ASEAN은 **positive test**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¹³⁾

3. 원산지 보충규정

FTA 원산지 결정은 주로 완전생산기준이나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실질적 변형기준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소기준·누적기준·흡수규정 등의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이 사용된다. 개별 기준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소기준

미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있어 최대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되는, 즉 누적기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수입된 재료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일반품목의 경우 한-칠레는 **FOB** 기준 8% 미만, 나머지 4개 FTA는 10% 미만을 채택하고 있다.

〈표 4〉 FTA별 최소허용기준

구 분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한-미
일반물품(가격기준)		8% 미만 (FOB)	10% 미만 (FOB)	10% 미만 (EXW)	10% 미만 (FOB)	10% 미만 (조정가치)
섬유제품(중량기준) (제50류~제63류)		8% 미만	8% 미만	10% 미만		7% 미만
농수 산물	기초농산물 (제1류~제14류)	8% + CTSH	적용제외	10% + CTSH	10% 미만 (FOB)	일부 농산물 미소기준 적용제외 합의
	가공농산물 (제15류~제24류)		10% + CTSH			

2) 누적기준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는 누적기준 중 양자간 누적만을 적용하고 있는데, 다만 한

13) 일례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특정공정기준 적용물품에 대한 상세는 관세청 FTA 연구회, 『섬유 및 의류제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 2008. 10.

-EFTA는 4개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EFTA 특성을 고려하여 역내국간 누적에 대한 특례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는 부가가치누적·재료누적·공정누적이 모두 허용되고 있음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3) Roll-up 원칙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는 Roll-down 원칙은 적용하지 않고 Roll-up 원칙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칠레와 한-싱가폴 및 한-ASEAN에서는 중간재에 대해, 한-미 FTA에서는 자가생산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한-EFTA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Roll-up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이 통례이다.¹⁴⁾

4) 불인정공정기준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은 불인정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불인정공정의 구체적 정도와 유형은 FTA별로 차이가 있다. 반면에 한-미 FTA는 불인정공정기준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불인정공정기준은 한-ASEAN과 한-미 FTA에서는 열거방식(exhaustive list)으로, 한-싱가폴과 한-칠레 FTA는 예시방식(illustrative list)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부속품 · 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과 포장재료의 원산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FTA에서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은 본 제품과 같이 수입되어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본 제품의 원산지 기준에 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속품 등을 별도로 수입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칠레, 한-싱가폴, 한-ASEAN, 한-미 FTA에서는 부속품 등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본 물품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면 본 물품의 원산지를 따르고,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율 계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EFTA는 전체적으로 본 물품의 원산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용 포장재료나 포장류에 대해서는 한-칠레, 한-싱가폴, 한-ASEAN, 한-미 FTA는 원산지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EFTA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운송용 포장재료나 포장류는 원산지 기준 판정 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¹⁵⁾

14) 김한성 외, 전제논문, 81면.

15) 참고로 소매용 포장재료나 포장류의 경우 한-칠레, 한-싱가폴, 한-ASEAN, 한-미 FTA는 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준수할 경우 원산지 고려에서 제외하나, 다만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따를 경우 부가가치율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FTA별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 등의 원산지 기준 비교

구 분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한-미
부속품 예비품, 공구	본제품의 원산지				-세번변경기준 : 본제품의 원산지 -부가가치기준 : 원산지결정시 포함
포장용품 · 포장용기	본제품의 원산지	명시규정 없음	본제품의 원산지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포함)	-소매용포장재 · 세번변경기준 : 본제품의 원산지 · 부가가치기준 : 원산지결정시 포함 -수송용 포장재 : 본제품의 원산지	

6) 대체가능물품

원산지 물품인지 결정하기 위해 원산지가 상이하더라도 물품의 본질적 특성·기능·구조 등이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는 다른 원산지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의 재고관리법(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평균법 등)에 따라 원산지 결정이 가능한 바, 이에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미 FTA는 대체가능물품과 재료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7)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

간접재료나 중립요소 원산지 결정방법으로 간접재료 생산지역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방법과, 간접재료와 중립요소를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한-칠레 FTA에 적용되며, 후자는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한-미 FTA에 적용된다.

4. 원산지 인정의 특례

1) 역외가공인정

역외가공인정에는 역외가공에 대한 품목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인정하는 일반적인 역외가공기준과 HS 6단위 또는 10단위 기준으로 일부 품목에만 인정하는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EFTA는 양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있고, 한-싱가폴, 한-ASEAN은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EFTA FTA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역외가공인정기준은 역외가공비율이 10% 이하에 불과한 경우 인정되며,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FTA가 채택하고 있는 제한적 역외가공인정제도는 물품요건·대상품목·인적요건·대상지역·인정요건 등이 각각 상이하다. 반면 한-미 FTA는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을 지정할 수 있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다.

〈표 6〉 FTA별 역외가공인정 제도 비교

구 분		● 한-칠레	● 한-싱가폴	● 한-EFTA	● 한-ASEAN	● 한-미
일반적 역외가공			없음	역외가공비용 10% 이하	없음	없음
제한적 역외가공	물품요건	없음	비원산지 총가치40% 이하+ 원산지 재료가격 45%이상	비원산지 재료가격40% 이하+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가격 60%이상	역외산 재료비율 40% 이하+총재료비 중 역내산 재료비율 60%이상	한반도 OPZ 규정에 의거
	대상품목		134개 품목(HS10단위 기준)	267개 품목(HS6단위 기준)	232개 품목(HS6단위 기준) 각 회원국별 100개	
	인적요건		원재료 수출자, 역외가공품 재수입자 동일요건	없음		
	대상지역		제한없음(개성공업지구 포함)		개성공업지구	
	인정요건		협정상의 원산지 충족요건 / 직접운송			

2) 개성공업지구 생산품

개성공업지구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규정을 존치한 최초 선행은 한-싱가폴 FTA이다. 그 외 FTA도 모두 개성공단의 원산지 예외규정을 가지고 있다. 한-미 FTA는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에 대한 역외가공인정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협상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물품에 대한 원산지 예외규정을 인정할 수 있는 협의조항을 명시하고 있다.¹⁶⁾

5. FTA 원산지증명제도와 발급절차

1) 원산지증명제도

현행 ‘자유무역협정의이행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증명서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원산지확인서류로 구분된다.¹⁷⁾

16)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한-미 FTA 협의내용은 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관 및 분쟁해결 장(제22장)의 부속서 22-나에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증명의 발급방법은 원산지증명 기관발급과 수출자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법이다. 자율발급방식에는 상업송장(I/V)에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표 7〉 원산지증명제도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원산지 자율증명제	원산지 기관증명제
장점	•발급절차 신속 · 편리 및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 •통관절차 간소화 및 계약당사자간 자율책임 가능	•공신력이 높음 •우회수입 방지
단점	•허위증명 가능성이 높음	•수출신고와 증명서 발급절차 중복 •절차복잡, 시간 및 비용 증가
사례	•한-칠레, 한-EFTA, 한-미	•한-싱가폴, 한-아세안
외국사례	•NAFTA, 미-싱가폴, 미-호주, 캐나다-칠레 등	•아세안, 일본-멕시코, EU-칠레 등

한편 원산지증명서 유효요건은 각 협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기재방법·유효기간 등을 주요 골자로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해야 한다. 당해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¹⁷⁾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직위·성명·서명 견본,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의 견본 등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이에 준한다.¹⁸⁾ 또한 원산지증명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 품명·품목번호(HS 6단위 품목번호)·수량·금액·원산지, 수출자·생산자 또는 공급자, 수입자 및 수입국명,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기재 관리에 대한 보관의무는 5년이다.

17)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18)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③.

19)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표 8〉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구 분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방법	유효기간
• 한-칠레	자율증명	수출자	양국간 통일증명방식	2년
• 한-싱가폴	기관증명	-싱가폴 : 세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양국간 각자증명방식	1년
• 한-EFTA	자율증명	수출자	상업송장에 기재방식	1년
• 한-ASEAN	기관증명	-아세안 : 각국 정부기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협정 규정양식	6월
• 한-미	자율증명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정형화된 양식 없음	4년

2)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의 경우 한-싱가폴 FTA 협정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및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된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²⁰⁾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사전발급과 사후발급 신청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법정 요구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원산지인증 수출자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²¹⁾ 후자는 수출자 과실·착오 여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위 사전발급신청 서류 이외에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확인사항으로 증명서 발급기관은 i)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ii)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iii)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빈도·협정 및 법령 등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20)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21) 이 경우 제출서류는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서류로서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개성공업지구 생산품의 경우 보고운송신고서 사본,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 내지 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②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원산지확인서, ④ 원산지소명서, ④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등.

제조공정 및 물품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iv) 부정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v)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vi)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²²⁾ ④ 원산지발급 기간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이외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²³⁾ ⑤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의 경우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생산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고, 달리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유효기간 12개월)를 사용할 수 있다.²⁴⁾ ⑥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최근 2년간 관세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허위·부정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²⁵⁾ 이 경우 지정절차는 세관장에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세관장은 20일 이내 인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추가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⑦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로써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작성번호·작성일자,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 수입자·수입국명,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²⁶⁾ 등의 사항을 기재·관리해야 한다.²⁷⁾

2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③.

2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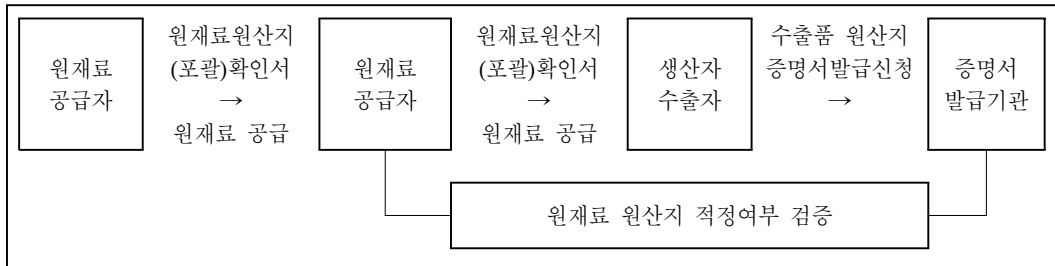
24)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3.

25)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26)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27) “협정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 9〉 원재료 원산지확인서의 흐름



IV. uTradeHub에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1.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요건

FTA 원산지 결정은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1차 상품인 경우 원산지 판단이 용이하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인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예외사항과 보충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품목별 적용규정에 따라 투입된 원재료의 원산지 결정뿐만 아니라 각 기업별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상 제조원가 3요소와 제조간접비까지 포함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각 FTA별로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많은 기업들이 FTA 원산지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발급절차의 복잡으로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일례로 한-ASEAN 수출의 경우 그 활용률이 3.88%에 불과한 실정이다.²⁸⁾ 이는 FTA 도입으로 국내업체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대신 체결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FTA 기업이 용이하게 사용가능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single window 기반 uTradeHub²⁹⁾에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³⁰⁾

2.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의 내용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은 uTradeHub상 FTA 포털을 구축, 그 내부에 다음과 같은 기반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기업의 ERP 및 uTradeHub와 연계가 가능한 ‘기업체 FTA 솔루션’을 개발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08-09), 16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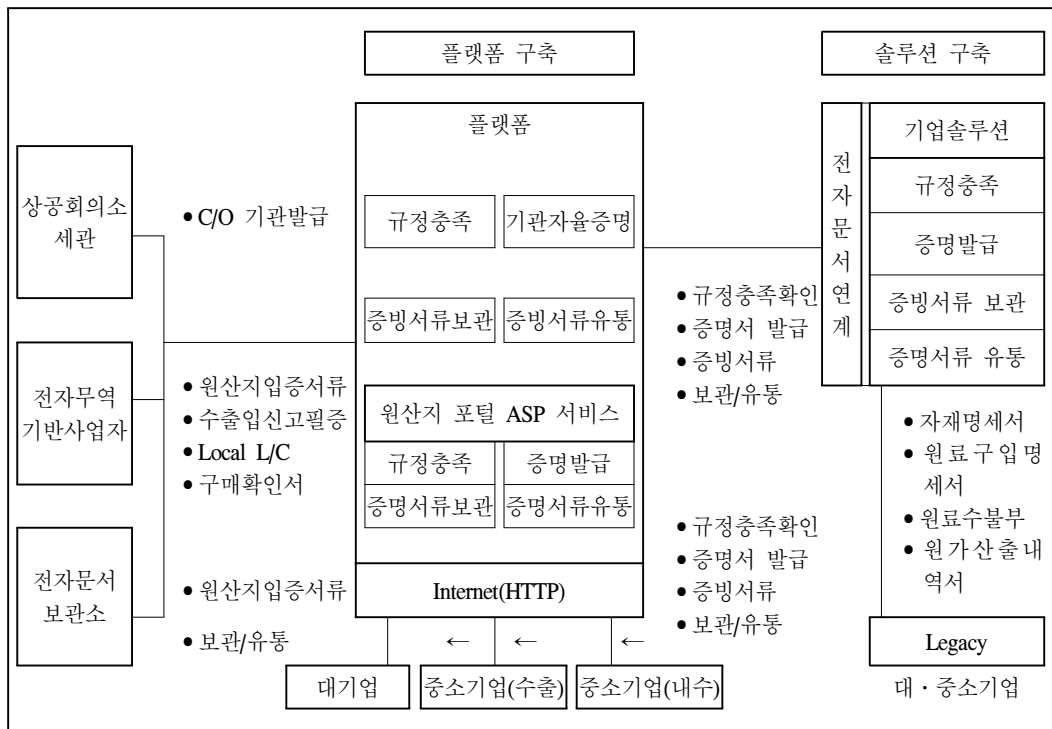
29) uTradeHub는 인터넷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시스템에 의하여 마케팅에서 결제에 이르는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무역절차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신개념의 국가 전자무역 허브를 일컫는다.

30) 상세는 한국무역협회,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FTA 이행 및 활용방안 간담회 발표자료, 2009.

하고 각 기업에 이를 보급하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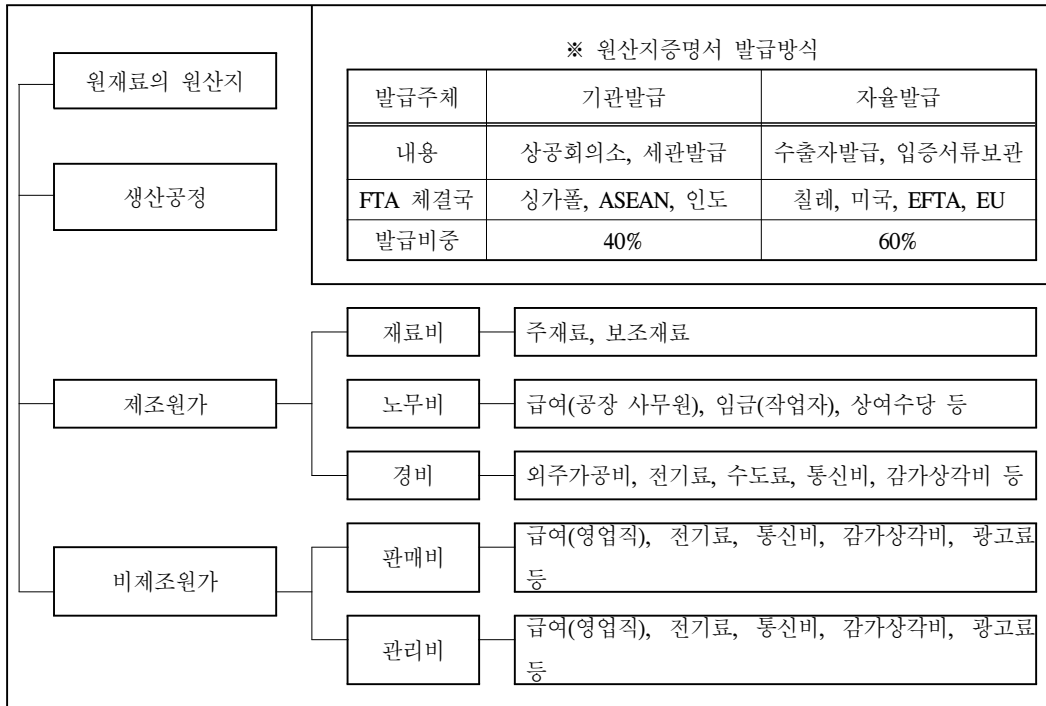
요컨대 e-C/O 원산지관리 플랫폼 구축의 기본 골격은 크게 원산지 입증서류의 문서정의 및 표준화와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 구현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각 프로세스 공히 ① FTA 원산지 판정 D/B 및 자가판정관리, ② 입증서류의 중계, ③ uTradeHub 및 전자무역보관소와의 연계, ④ 외부기관 및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³¹⁾

〈표 10-1〉 원산지관리 플랫폼과 솔루션의 연계



31) 상세는 심종석·오현석, “FTA기업의 전자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제9권 제4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9, 12~13면.

〈표 10-2〉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요소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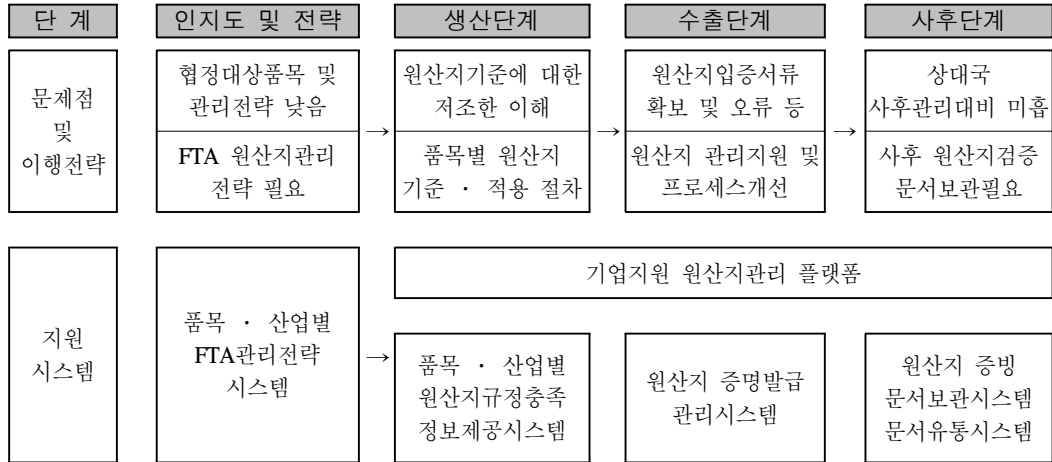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원산지관리 플랫폼은 기업의 ERP 내지 기업체 FTA 솔루션과 연계되어 회계정보 및 무역문서와 원산지관리 플랫폼의 D/B를 활용한 원산지충족정보 관리기능과 입증서류 관리·유통, 증명발급관리·보관 등 기능을 가진 원산지관리 솔루션이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요건을 목표시스템으로 할 때, 그 기본적인 골격은 위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 FTA 이행 업무단계별 시스템화 전략 요약

FTA 이행단계별 시스템화 전략은 4가지로 대별 가능한데, 주요 골자는 ① FTA 체결 대상국별·품목별 FTA 활용방법·절차·세율사후 검증방법 등 자가진단을 통한 원산지규정 충족 관리 시스템 확립, ② 원산지 증명발급·부속문서(원산지확인서·수출신고필증·송품장·공정내역서·원재료내역서·부품구입증명서 등) 관리시스템 설계, ③ 원산지확인서 제출에 대한 각 협정별 검증절차, 증명서류 대응 및 각 원산지 기준(예컨대 부가가치기준은 관세지식·원가회계·전자기술 등)을 결합한 통합시스템 구축, ④ 원산지증명 검증요구 시 당해 증명서와 부가서류 제출에 대한 시스템과 기업 간 상거래 문서(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부품업체의 부품구입증명서·거래명세서 등) 유통시스템 구축 등이다. ⑤ 아울러 기존 정보시스템 재활용 및 개발경험의 활용극대화

또한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전술한 바 **uTradeHub** 기반 인프라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자원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신규 구축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기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1〉 FTA 이행 업무단계별 시스템화 전략 요약



2) 자가 판정시스템

수출업체가 각 판정기준에 따라 원재료 · 제조원가 · 제조공정 등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국내 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원재료 수입국가를 FTA 누적기준 적용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원산지 판정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FTA 컨설팅이 없이도 기업체가 원재료 수입지역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원산지 자율발급관리 및 문서보관 기능

기업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하는 한-칠레, 한-EFTA, 한-미간 FTA에 규정에 맞게 발급시스템과 발급된 내용 및 관련 서류를 전자무역문서보관소에 각 FTA별로 정한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4) FTA 원산지증명 관련 문서의 유통 및 유관기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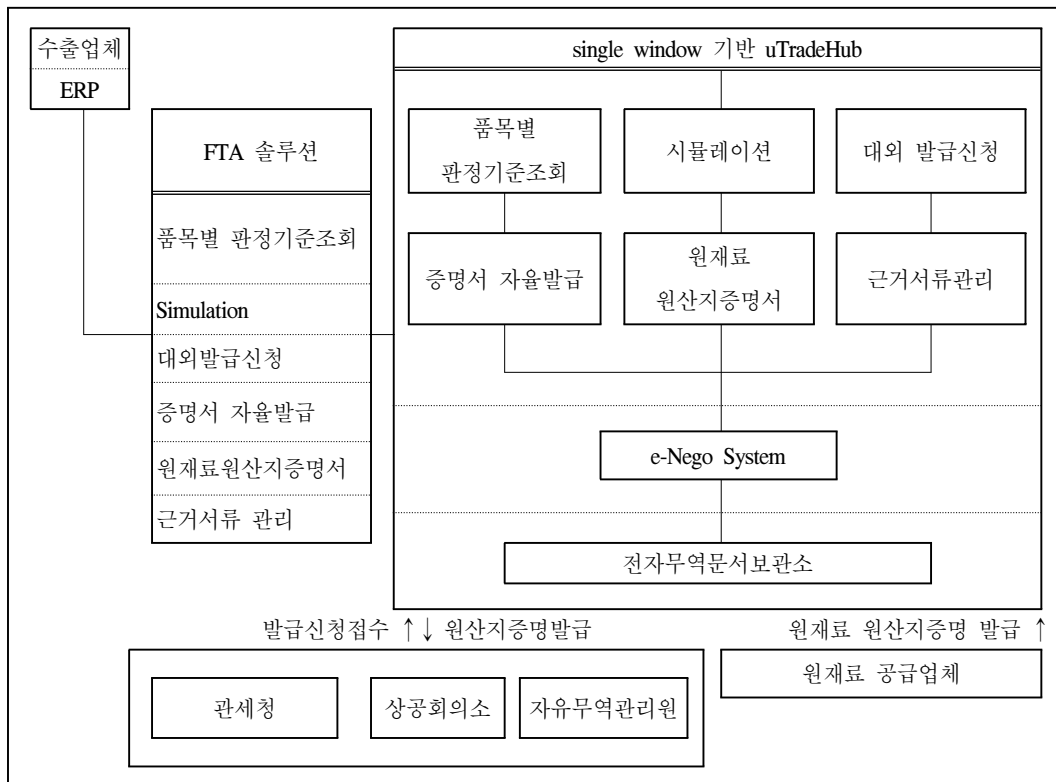
원재료 공급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재료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와 기업체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을 uTradeHub를 통해 발급기관인 관세청 · 대한상공회의소 · 자유무역관리원에 전달하고 발급기관으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를 uTradeHub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5) 기업 ERP 및 uTradeHub와 연계가 가능한 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

기업체의 회계시스템 및 수출·입 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산지를 판정 및 관리할 수 있고, 또한 uTradeHub와 연계를 통해 원재료원산지증명서 및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결과를 수신할 수 있는 기업체 FTA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각 수출업체에게 공급하여 기업체가 FTA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³²⁾ 이상과 같은 요건에 따라 당해 시스템의 최종 목표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시스템 목표 모델



32) 상세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시행”, 2008. 07. 14.

V. 요약 및 결론

FTA의 중심요소는 무역에 있어 관세와 수량제한을 제거하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내국민대우에 주안점을 두고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상계조치, 예외와 유보조항, 분쟁해결 등이 FTA의 주요 골자를 이룬다. 본 고는 이상의 FTA 중심요소 중 원산지규정 내지 이에 관한 관리체계의 개선·보완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single window 기반 uTradeHub상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기반구축에 대한 플랫폼의 골격을 제시한 논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FTA 국가에서는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각종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수출·입 통관 시 관련 서류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원산지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이는 그간 각국의 원산지규정이 상이하고 복잡·불명료하여 일련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른 응당의 조치라 판단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담보됨이 없이 당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한편으로 FTA 체결·발효에 기인하여 국내업체는 이에 상당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신에 상대국에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해 시사점은 single window 기반 uTradeHub상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당위를 함의하는데, 본 고는 이에 대하여 그 기본 골격으로서의 플랫폼을 다음과 같이 설계·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당해 FTA 기업의 ERP 및 uTradeHub와 연계 가능한 기업의 특화된 FTA 솔루션을 개발하여야 하는 바, 이는 각 기업의 처지와 환경 및 이해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e-C/O 원산지관리 플랫폼 구축의 기본 골격은 크게 원산지 입증서류의 문서정의 및 표준화와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 구현으로 대별 가능한데, 이는 FTA 원산지판정 D/B 및 자가판정관리, 입증서류의 중계, uTradeHub 및 전자무역보관소와의 연계, 외부기관 및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기능의 수행을 담보로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플랫폼은 기업의 ERP와 연계되어 회계정보 및 무역문서와 원산지관리 플랫폼의 D/B를 활용한 원산지충족정보 관리기능과 입증서류 관리·유통, 증명발급관리·보관 등 기능을 가진 원산지관리 솔루션이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FTA 이행단계별 시스템화 전략은 FTA 체결 대상국별·품목별 FTA 활용방법·절차·세율사후 검증방법 등 자가진단을 통한 원산지규정 충족 관리시스템 확립, 원산지 증명발급·부속 문서 관리시스템 설계, 원산지확인서 제출에 대한 각 협정별 검증절차·증명서류 대응 및 각 원산지 기준을 결합한 통합시스템 구축, 원산지증명 검증요구 시 당해 증명서와 부가서류 제출에 대한 시스템과 기업 간 상거래 문서에 대한 유통시스템 구축의 순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존 정보시스템 재활용 및 개발경험의 활용극대화를 위하여 uTradeHub 기반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자원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신규 구축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기능 담보를 요건으로 한다.

여섯째 자가 판정시스템 구축에 기하여 수출업체가 각 판정기준에 따라 원재료·제조원가·제조공정 등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국내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원재료 수입국가를 FTA의 누적기준 적용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의 원산지 판정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FTA 컨설팅이 없이도 기업체가 원재료 수입지역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산지 자율발급관리 및 문서보관 기능에 관하여 기업체가 개별 FTA 규정에 맞게 발급시스템과 발급된 내용 및 관련 서류를 전자무역문서 보관소에 각 FTA별로 정한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일곱째 원산지증명 관련 문서의 유통 및 유관기관 연계성을 확보하여 원재료 공급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재료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와 기업체가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uTradeHub를 통해 발급기관인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자유무역관리원에 전달하고 발급기관으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를 uTradeHub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FTA 기업의 회계시스템 및 수출·입 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산지를 판정 및 관리할 수 있고, 또한 uTradeHub와 연계를 통해 원재료원산지증명서 및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결과를 수신할 수 있는 기업체 FTA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각 수출업체에게 공급하여 기업체가 FTA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섬유 및 의류제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 2008. 10.
- 구갑우, “세계무역기구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1, 429면.,
- 기획재정부, “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시행”, 2008. 07. 14(보도자료).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제1장 제1절.
-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KIEP 연구보고서」(08-09), 2009, 77면.
- 김현중, “왜 FTA를 추진하는가?”, 「통상법률」통권 제61호, 법무부, 200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09), 162면.

_____, “FTA 원산지 규정의 결정요인 분석, 2004. 10.

서민교,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미 FTA의 평가와 향후 과제”, 『e-비즈니스연구』제9권 제2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성윤갑,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12.

심종석·오현석, “FTA기업의 전자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제9권 제4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9, 12~13면.

지식경제부, “FTA 활용확대를 위한 원산지 관리 전략세미나”, 2008. 12.

_____, “원산지증명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보급전략세미나”, 2009. 06.

한국무역협회,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FTA 이행 및 활용방안 간담회 발표자료, 2009.

_____, 『FTA 원산지규정 활용 가이드』(07-051), 2007. 09.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homepage.ktnet.co.kr」

「www.efta.int」

「www.fta.go.kr」

「www.mofat.go.kr/economic」

「www.utradehub.or.kr」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C/O Systems Based on uTradeHub through the Analysis of FTA Rules of Origin

Chong-Seok Shim

The certificate of origin any given FTA will determine a rule for each manufactured product, based on its HS code. Each and every rule will provide several options to calculate whether the product has preferential origin or not. Each rule is also accompanied by an exclusion rule that defines in which cases the product cannot obtain preferential status at all. A typical value based rule might read : raw materials, imported from countries that are not members of this FTA, used in production do not make up for more than generally 25% of the EXW value of the finished product. A typical tariff shift rule might read : none of the raw materials, imported from countries that are not members of this FTA, used in production may have the same HS code as the finished product. The certificate of origin must be signed by the exporter, and often notarized and citation needed then validated by a chamber of commerce and so on. Most chambers of commerce and some trade associations have been authorized by their customs agencies to certify non-preferential, and in some cases, preferential certificates of origin. Thus, a chambers' role in the issuance and attestation of certificates of origin is both unique and vital in facilitating international trade. In the other hands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will consist of a web-based system(i.e. uTradeHub based on single window) for the application and delivery of the certificates of origin. uTradeHub service provides cost effective services worldwide and this will allow exporters to apply anytime and thus will save them time. With this system, the certificate of origin will also be incorporated with special security features to prevent forgeries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Key Words : FTA, Rules of Origin, Certificate of Origin, uTradeHub, Single Window.